

한국세무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한국세무사회는 1961. 9. 9. 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해 왔으며 원활한 세무 행정에 협력하여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국세무사회 1만2천여 세무사회원들은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세무사회는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사업명 : 한국세무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신청인원(단체) : ○○○명(개인/단체 포함)
3. 지원금액 : 1인(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4. 연장신청기간 : 2016.11.29.(화)~2016.12.15.(목)
5. 신청방법 : 취약계층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 우편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우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
※ 우편봉투에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재증” 표기요망
6. 대상발표(연장분) : 2016.12.29.(목) 본회 홈페이지(공지사항)
7. 문 의 처 :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 02-521-9451~3

□ 첨부

1. 한국세무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개인, 단체) 취약계층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끝.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1) 개인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
- 기타 한국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단체

-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
(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2. 구비서류

(1) 개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송금을 위한 본인소유 통장) 1부.
- 가족환경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일반 저소득층(차차상위계층) : 부·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과세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단체

- 신청단체 설립허가서(고유번호증 포함) 사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송금을 위한 단체소유 통장) 1부.

3. 지원 신청시 유의 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 현재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철회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단체 신청시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